||| <u>목 차</u> |||

2018년도 **주택도시기금 운용**계획

2018. 1.

국 토 교 통 부

│. 개요 및 기본방향	1
Ⅱ.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	. 2
Ⅲ.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······	3
1. 수입계획	3
2. 지출계획	4
3. 추정 대차대조표	E
4. 추정 손익계산서	<u>ç</u>
5. 기금운영비	10

I 개요 및 편성방향

1. 개 요

□ 설치 근거 및 목적

o (근 거)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및 제3조

주택도시기금법 제1조(목적)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기금의 설치)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·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한다.

○ (목 적)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

□ 기금조성 및 운용

- (조성) 융자원리금 회수 등 자체재원과 국민주택채권·청약저축, 일반회계 및 복권기금 전입금 등으로 조달
- (운용)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주택건설자금 지원,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·전세·개량자금 등을 지원

2. 편성방향

편성방향

- ▶ 국민주택 건설 및 저리의 안정적인 주택자금 공급으로 국민 주거 복지를 증진하고,
- ▶ 취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(주택도시기금법 제1조)

□ 주요특징

-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여, 도시재생·임대주택 리츠 등 다양한 주택도시사업에 지원
- 국민주택채권, 청약저축 등을 통해 저소득·서민층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
-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과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행복주택을 포함한 국민·영구·공공임대 등 공공주택 건설 지원
- 서민들의 주택구입 및 전·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의 주택자금 육자 지원
- 주택의 질적 향상 및 지역 전체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 등 추진

Ⅲ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

- (자금수입 및 지출계획금액) 2018년도 주택도시기금(이하 "기금" 이라 함)의 자금수입계획 및 자금지출계획은 각각 다음과 같다.
 - 자금수입계획 금액 : 737,283억원
 - 자금지출계획 금액 : 737,283억원
- (운용계획) 2018년도 기금의 조성·운용계획, 추정대차대조표, 추정 손익계산서 및 융자기준은 별지와 같다.
- (기금운영비의 지출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관리비중 위탁수수료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에 대하여는, 각각 위탁수수료 지급 산식상의 업무량 증감 및 대출금 잔액 증감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, 2018년도에 미지출된 금액은 2019년도에 계속하여 지출할 수 있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경기 활성화와 지원조건 개선 등을 위하여 국민주택 건설자금,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등의 대출규모와 대출조건을 시장금리 동향 등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·적용할 수 있다.

Ⅲ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

1. 수입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2018년 계획	비고
	[11] 재산수입	2,867,499	
	[52] 정부출자수입	174,399	
	[521] 정부출자수입	71,156	
	[54]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	2,693,100	
	[544] 기타민간이자수입	2,693,100	
	[12] 경상이전수입	41,891	
	[59] 기타경상이전수입	41,891	
	[593] 법정부담금	45	
	[596] 기타경상이전수입	41,846	
	[13]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	53,540	
	[69] 잡수입	53,540	
2	[691] 기타잡수입	53,540	
주	[20] 융자 및 전대차관회수	13,615,700	
택	[75] 융자원금회수	13,615,700	
택	[754]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	13,615,700	
_0	[31] 차입금 및 여유자금 회수	27,381,760	
계	[81] 국공채수입	15,000,000	
	[811] 국공채발행수입	15,000,000	
정	[84] 유가증권매각대	-	
	[843] 기타유가증권매각대	-	
	[85] 정부예금회수	12,381,760	
	[852]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	1,708,328	
	[853]	10,673,432	
	[40]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	29,077,769	
	[91] 전입금	1,495,123	
	[911] 일반회계전입금	944,762	
	- [913] 기금전입금	550,361	
	[92] 예탁금회수	10,201,724	
	[923] 기금예탁금회수	10,201,724	

	구 분	2018년 계획	비고
	[94] 예수금	17,118,500	
	[943] 기금예수금	10,000	
	[946] 기타민간예수금	17,108,500	
	[95] 예탁이자수입	262,422	
	[953] 기금예탁이자수입	262,422	
	소 계(주택계정)	73,038,159	
	[11] 재산수입	5,248	
	[54]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	5,248	
	[544] 기타민간이자수입(도시계정)	5,248	
도	[31]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	10,000	
시	[85] 정부예금회수	10,000	
계	[852]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(도시계정)	10,000	
정	[40]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	674,865	
	[91] 전입금	674,865	
	[915] 주택계정 전입금(도시계정)	674,865	
	소 계(도시계정)	690,113	
	합 계	73,728,272	

2. 지출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	분	2018년 계획	고
	[1000]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	2,423,542	
	[1038]	1,030	
	[401] 재건축초과이익자본이전	1,030	
	[1041] 주택신보출연	105,457	
	[401]	105,457	
	[1042] 이차보전지원	104,277	
주	[401] 이차보전지원	104,277	
택	[1043] 주택도시보증지원	70,000	
계	[301] 주택도시보증공사출자	70,000	
	[1071] 이자상환	1,968,700	
정	[798]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	726,800	
	[799] 국공채이자상환	1,241,900	
	[1076] 수탁은행관리	174,078	
	[600] 위탁수수료	174,078	
	[1100] 분양주택등 지원(융자)	647,282	
	[1131] 주거환경개선지원(융자)	313,300	

			(단위 : 백만원)
	분	2018년 계획	고
	[402] 집주인임대주택사업	293,300	
	[403] 위험건축물이주자금지원	20,000	
	[1134] 분양주택지원(융자)	333,923	
	[401] 분양주택(융자)	333,923	
	[1136] 준주택지원(융자)	59	
	[401] 준주택지원(융자)	59	
	[1200] 구입 · 전세자금	7,350,000	
	[1231] 주택구입·전세자금(융자)	7,350,000	
	[401] 주택구입·전세자금(융자)	7,350,000	
	[1300] 임대주택지원(융자)	8,862,633	
	[1332] 국민임대주택지원(융자)	494,248	
	[401] 국민임대(융자)	494,248	
	[1333] 공공임대주택지원(융자)	2,795,395	
	[401] 공공임대(융자)	1,711,163	
	[404] 민간임대(융자)	1,084,232	
	[1335] 행복주택지원(융자)	1,339,490	
	[401] 행복주택(융자)	1,339,490	
택	[1336] 다가구매입임대(융자)	932,500	
계	[401] 다가구매입임대(융자)	932,500	
w1	[1337] 전세임대주택지원(융자)	3,301,000	
정	[401] 전세임대(융자)	3,301,000	
	[1400] 임대주택지원(출자)	3,309,975	
	[1440] 임대주택지원	3,309,975	
	[402]다가구매입임대출자	850,250	
	[403]전세임대경상보조	67,894	
	[404]국민임대출자	125,980	
	[407]영구임대출자	64,458	
	[408]행복주택출자	1,004,593	
	[409]임대주택리츠출자	1,196,800	
	[2100]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(기금운영비)	1,001	
	[2176]기금운영비	1,001	
	[634]기타경비	1,001	
	[8900] 기금간거래(전출금)	1,015	
	[8910]기금전출(주택도시기금) [891]주택도시기금에서 복권기금으로의 반환금	1,015 1,015	
	[9000] 기금간거래(예탁금)	8,715,615	
	[9002] 사학진흥기금예탁금	215,615	
	[900] 주택도시기금에서 사학진흥기금으로 예탁금	215,615	

	구 분	2018년 계획	(단위 : 백만원) 비 고
		0.500.000	
	[9003]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	8,500,000	
	[910]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금	8,500,000	
	[9100] 기금간거래(예수원금상환) [9110]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	60,764 50,764	
	[911]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원금상환	50,764	
	[9130] 기타기금예수원금상환	10,000	
	[910] 주택도시기금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원금상환	10,000	
	[9200] 기금간거래(예수이자상환)	2,492	
	[9201]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	2,051	
	[921]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이자상환	2,051	
	[9220] 기타기금예수이자상환	441	
	[920] 주택도시기금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이자상환	441	
주	[9300] 계정간거래(전출금)	674,865	
택	[9310] 주택계정에서 도시계정으로의 전출금	674,865	
-4	[999] 주택계정에서 도시계정으로의 전출금	674,865	
계	[9700] 여유자금운용	16,480,475	
정	[9701] 여유자금운용(주택도시기금)	16,480,475	
	[971] 통화금융기관예치금(주택)	2,150,000	
	[972]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(주택)	14,300,475	
	[973] 기타여유자금운용(주택)	30,000	
	[9800] 차입금 등 원금상환	24,508,500	
	[9850] 기타민간예수금원금상환(주택도시기금)	14,448,800	
	[980] 기타민간예수금원금상환	14,448,800	
	[9860] 국공채원금상환(주택도시기금)	10,059,700	
	[980] 국공채원금상환	10,059,700	
	계(주택계정)	73,038,159	
	[1500] 도시재생활성화	680,113	
	[1510] 도시재생지원	278,142	
도	[992] 도시재생사업지원	3,310	
노 시	[997] 도시재생지원(융자)	74,832	
계	[998] 도시재생지원(출자)	200,000	
정	[1520] 도시기능증진	397,000	
	[994] 수요자중심형재생지원	47,000	
	[995] 가로주택정비사업	200,000	

(단위 : 백만원)

		(단위 : 백만원)
분	2018년 계획	고
[996]	150,000	
[1530] 위탁관리	4,931	
[600] 위탁수수료	4,931	
[1540] 기금운영비	40	
[634] 기타경비(도시)	40	
[9700] 여유자금운용	10,000	
[9701] 여유자금운용(주택도시기금)	10,000	
[971] 통화금융기관예치금(도시)	10,000	
계(도시계정)	690,113	
합 계(주택도시기금)	73,728,272	

3. 추정대차대조표

(단위 : 백만원)

		분	2018 (추정)	비고
	(디	총대출금 H손충당금)	90,894,515 94,834,969 (3,940,454)	
산	 ○ 예치금 ○ 투자유가증권 ○ 미수이자 등 		11,309,321 67,827,581 159,382	
		합 계	170,190,799	
부	부채	○ 국민주택채권 ○ 청약저축 ○ 기금예수금 ○ 유동성장기부채 등 ○ 미지급이자 등	61,757,339 67,048,266 48,590 19,524,999 2,309,724	
와		소 계	150,688,919	
자 본	자 본	○ 기본순자산 ○ 적립금및잉여금 ○ 순자산조정	343,000 16,136,708 3,022,172	
		소 계	19,501,880	
		합 계	170,190,799	

4. 추정손익계산서

(단위 : 백만원)

	분	2018 (추정)	기 . 국민전) 비고
	0	2,854,594	
	- 대출금 이자	2,581,202	
 익	- 예치금 이자	273,393	
4	○ 사업외 수익	926,367	
부	- 복권기금수익금	550,361	
문	- 기타 영업외수익	376,006	
	합 계	3,780,961	
	○ 차입금 이자	1,968,700	
	ㅇ 기금 운영비	183,360	
	○ 이차보전지원	104,277	
用	○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	105,457	
8	○ 대손충당금전입액	760,015	
 부	ㅇ 사업외비용	404,893	
문			
	비용계	3,526,702	
	당기순이익	254,259	
	합 계	3,780,961	

5. 기금운영비

(단위 : 백만원)

항 목	금 액	비고
○ 합 계	180,050	
- 위탁 수수료	179,009	- 주택계정 : 174,078백만원 - 도시계정 : 4,931백만원
- 연구 용역비	440	- 주택계정 : 440백만원
- 관서운영비 등	601	- 주택계정 : 561백만원 - 도시계정 : 40백만원

(단위 : 만원, %)

				(단위 : 만원, %)
자금종류	호당융자 한 도 액	연이율	융자기간	비고
ㅇ 주택시장 안정 및 주	거복지향상(분	양주택 등	융자)	
• 집주인리모델링 임대주택	다가구 30,000 (가구당 6,000) 공동주택 호당 6,000	1.5 ~2.5	12년, 16년, 20년 상환	-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(장기임대 목적으로 신축 또는 수선하여 IH 등에 임대관리를 위탁) ※ 임대 위탁기간 내 대상주택 매도 또는 중도 상환시 위약금리 부과-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-혼합상환의 경우, 대출원하 연장시 당초 대출원금의 5% 이상 상환
•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	다가구 40,000 (가당 5,000), 공동주택 호당 8,000	1.5	8년, 12년 (만기 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활상환)	-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등 공동 주택 (장기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LH 등에 임대관리를 위탁) ※ 임대 위탁기간 내 대상주택 메도 또는 중도 상환시 위약금리 부과 -대출금액은 주택가격의 50% 한도
•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대출	수도권 1.5억 지방 1.2억 (보 중금 의 80% 이내)	1.3	2년 거치 일시상환 (2회 연장 가능, 총 6년)	-안전위험 D, E 등급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소유자, 세입자 -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단독·다세대 주택 소유자 · 부부합산 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(신혼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)인 무주택(퇴거주택 제외) 세대주 -지자체 및 LH 등 공공기관(주거환 경개선사업 시행자)
 공공분양주택자금 전용면적 60㎡이하 60㎡초과~ 	5,500	3.6 (4.6) [디딤돌	· 사업자 : 3 이내 일시상환 (공공주택법 적용 주택의 경우	-조합주택·유입물건 포함 -건축허가 대상사업의 경우 호당한도: 3천만원 -[]는 입주자 대환시 금리 ·무주택 요건 및 소득요건 증빙
85m [*] 이하	7,500	대출금리] 3.8 [디딤돌 대출금리]	4년이내 일시상환) ・입주자 :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상환	** 구도 자신 보고 다 한 이 등 즉시, 디딤돌 대출금리와 연동하되, 미증병시 연 2.8%** · 전용면적 60㎡이하 주택을 공급받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대환시 연 1.8% 적용** - 전용면적 60㎡초과~85㎡이하는 다음에 한하여 지원(신규 지원중단)** · 공공기관에 한하며, 75㎡초과~85㎡이하는 공공주택법 적용주택에 한하여 지원** - 공공기관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이상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대출한도를 10% 상향 조정(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

(단위 : 만원 				
자금종류	한 도 액	연이율	융자기간	비고
				-()는 민간적용 금리
• 도시형 생활주택 • 단지형 다세대, 연립 • 전용면적 60m'이하 - 전용면적 60m'초과~ 75m'이하(공공기관)	5,000 5,000	3.8 [디딤돌 대출금리] 4.0	3년이내 일시상환	-기존 분양주택건설기준 준용 -[]는 입주자 대환시 금리 ·무주택 요건 및 소득요건 증빙 ·충족시, 디딤돌 대출금리와 연동하되, 미증빙시 연 2.8% ·사업계획숭인을 받는 경우 1%p 우대
/5!!! 악아(중중기년)		[디딤돌 대출금리]		•
• 도시형 생활주택(원룸) • 14㎡이상∼30㎡미만 • 30㎡이상∼50㎡이하	m'당 80 m'당 100	4% [더딤돌 대출금리]	3년이내 일시상환	-용자 한도 : 최저 1,120만원(14㎡), 최고 5,000만원(50㎡) -[]는 입주자 대환시 금리 · 무주택 요건 및 소득요건 증빙충 족시, 디딤돌 대출금리와 연동하 되, 미증빙시 연 2.8%단, 원룸 대출기간 20년의 주택을 매각 (분양)하는 경우에는 잔여대출조 건을 유지하여 대환처리 (금리는 대환금리 2.8% 적용)
• 다세대주택자금	3,500	3.8 [디딤돌 대출금리]	 사업자 : 2년이내 일시상환 입주자 :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상환 	-주택의 사업승인 후에도 입주자 앞으로 대환되지 못한 사업자의 경우 당초 상환기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대출기간 연장가능 -[]는 입주자 대환시 금리 ·무주택 요건 및 소득요건 증빙충 족시, 디딤돌 대출금리와 연동하 되, 미증빙시 연 2.8%
• 다가구주택자금	28,000 (가구당 3,500)	3.8	1년이내 일시상환	-대출금의 20%이상(3년차 연장시부 터 30%) 상환시 당초 상환기일로 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1년 단위 로 연장가능 * 3년차 연장시 금리 1.5%p 가산 (금리가산은 금리 2.0%로 취급된 분에 한함)
•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		1.5	3년거치 17년상환	-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의하되 특별재해지역은 최대 6,000만원까지 가능 -재해주택복구시 수도권을 제외한 읍·면지역(도시지역 제외)은 전

인증을 받은 경우는 20% 상향)

(단위 : 만원,	-%)
-----------	-----

				(단귀 : 단편, %)
자금종류	호당융자 한 도 액	연이율	융자기간	비고
				용면적 100㎡까지 융자
• 주택 내진보강 지원	단독주택 호당 4,000 공동주택	1.8	2년거치 8년상환	- 내진보강을 위해 허가권자에게 건축·대수선 허가(또는 신고)하는 주택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함
	호당 2,000			
 후분양주택자금 전용면적 60m'이하 60m'초과~ 	6,000 8,000	4.1 [디딤돌 대출금리] 4.3	 사업자 : 3 일시상환 입주자 : 1 19년상환 	-[]는 입주자 대환시 금리 ·무주택 요건 및 소득요건 증빙 ·충족시, 디딤돌 대출금리와 연동하되, 미증병시 연 2.8%
85m² 이하		[디딤돌 대출금리]	또는 3년거치 17년상환	
▪ 준주택지원 · 오피스텔	80/ m²	5.0	3년내 일시상환	-오피스텔 : 실당 바닥면적 12~50㎡
· 고시원	40/ m²	5.0	3년내 일시상환	-고시원 : 실당 바닥면적 7~20㎡
ㅇ 주택시장 안정 및 주기	거복지향상(주			
•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	20,000	2.25~3.15	-0년 (1년) 거치 10년, 15년, 20년, 30년 상환	-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(생 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 7천만원)이하인 무주택세대주 * 대상주택: 85㎡ 이하 5억이하 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㎡) -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소유자-DTI 60%이내→LTV 최대 70%-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선택가능 * 다자녀가구 0.5%p, 다문화가구·장애인가구·생애최초주택구입자·산인가구·생애최초주택구입자·산인가구·생애최초주택구입자·산인가구·생애최초주택구입자·산인가구·생애최초주택구입자·산인가구·생애최초주택구입자·산인가구·생애최초주택구입자·산인가구·생애최초주택구입자·산인가구·생애최초주택구입자·산인가구·생애최초주택구입자·산인가구·생애최초주택구입자·산인가구·생애최초주택구입자·산인가구·생애최초주택구입자·산인가구·생애최초주택구입자·산인가구·생애최초주택구입자·산인가구·생애최초주택구입자·산인가 생약자측 장기가입자: 가입기간 1년(월12회담입)이상 0.1%p, 3년(36회)이상 0.2%p 우대 *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계약시 0.1%p 우대하되,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(단, '18.12.31까지 한시 적용)

자금종류	호당융자 한 도 액	연이율	융자기간	비 고
•신혼부부전용 디딤돌 구입 대출	20,000	1.70~2.75	-0년 (1년) 거치 10년, 15년, 20년, 30년 상환	부부 만기별 급리(%) 10 15년 20년 30년 연소독 2천만원 2.00 210 2.20 2.30 2~4천만원 2.45 2.55 2.65 2.75 4~6천만* 2.85 2.95 3.15 3.15 • 생애최초 구입자 : 4~7천만원 이하 -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부부합산 총소득이연 7천만원이하인 무주택세대주 * 대상주택 : 85㎡ 이하 5억이하 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먼지역은 100㎡) -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총소득이연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소유자 -DTI 60%이내→LTV 최대 70% -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선택가능 * 청약저축 장기가입자: 가입기간 1 년(월12회납입)이상 0.1%p, 3년(36회) 이상 0.2%p 우대 *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계약시 0.1%p 우대하되, 다른 우대금의와 중복적용 가능(단, '18.12.31까지한시 적용) <만기・소득별 금리현황> 부부 만기별 금리연%)합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연산등 2.40 2.40 2.40 2.40 2.40 2.40 2.40 2.40
• 공유형 모기지	20,000	1.5 (수익형) ·5 :1 ·5년이후:2 (손익형)	 수익형 :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상환 · 손익형 : 20년 일시 상환 	-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 택 세대주,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
•오피스텔 구입자금	7,000	2.8	2년이내 일시상환 (9회 연장 가능)	-오피스텔은 전용면적 60m'이하, 1.5 억원이하 주거용 (LTV 50%한도) * 3자녀이상 세대는 0.5% 금리우대 * 장애인·다문화가구 0.2% 금리우대 * 연소득(부부합산) 2~4천만원이하는 0.3% 금리우대, 2천만원이하는 0.5% 금리우대

(단위 : 만원	, %)
----------	------

	호당융자			(단위 : 만원, %)
자금종류	한 도 액	연이율	융자기간	비고
택구입자금 o 주택시장 안정 및 주기	80% 범위내 이복지향상(주		-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상환 -5년거치 25년상환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7년상환	-LTV 70%이상 주택 또는 1년이상 임차중인 주택 구입시 용자 * 대상주택: 85㎡ 이하 6억이하 -3자녀이상 세대는 0.5% 금리우대 * 장애인·다문화가구 0.2% 금리우대 - 분양자금 일반업주자 앞 이율 적용(2.8%)
• 소년 · 소녀가정 및 교 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	수도권 : 9,000 광역시 : 7,000 기타 : 6,000	무이자	대출일이 속하는 당해연도 12월 20일 (1년단위 연장)	-만20세까지는 무이자, 만20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최대 6회까지(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출이율 적용)
• 전세임대 자금	수도권 : 9,000 광역시 : 7,000 기타:6,000	2.0 (보증금규 모별 지원금리 차등)	대출일이 속하는 당해연도 12월 20일 (1년단위 연장 가능)	-쪽방, 비날하우스 포함 -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및 광역시 110백만원, 기타지역 8백만원(단,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수도권 광역시 1.5억원, 기타 1.2억원) • 청년전세임대의 경우 2인 공동 거주 시수도권 1.5억원, 강타 1.2억원, 기타 12억원, 기타 12억원, 기타 1억원, 3인 이상 공동 거주 시수도권 2억원 광역시 1.5억원 기타1억원 지원 - 세월호 긴급지원대상자 중 무주택세대주)에 한해 대출한도 1억원 (2년간 한시 시행/14.8.11일~) -보증금규모별 지원금리 차등적용 4천만원 ~6천만원 6천만원 이하 초과 연 1.0% 연 1.5% 연 2% - 특별재난지역 전세임대 특별공급 신설 ·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지역 •지역별 용자한도에도 불구하고, 수도권 융자한도까지 지원 가능 •보중금규모별 지원금리도 최초 1회 (2년)에 한해 50% 인하, 2년초과 6 년까지 기본금리 적용
• 버팀목 전세자금	수도권 13,000, 지방 8,000 (다만, 다자녀 가구 및	2.3~2.9 (1.3~1.7)	2년이내 일시상환 (4회 연장, 최장 10년 가능)	- 부부합산 총소득 50백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(단, 신혼부부,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,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는 60백만원 이하) - 대출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% 내에 서 소득·부채 등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

	호당융자				`	만원, %)
자금종류	한 도 액	연이율	융자기간	비	고	
	신혼가구는 수도권 15,000, 지방 10,000)			* 대상주택 : 85m 억원 이하(지방		
	10,000)			<만기 · 보증	금별 금리현	황>
				보증금 5천만원 소득 이하	5천만~ 1억	1억 초과
				2천만원 이하 23 (1.3)	24 (1.4)	2.5 (1.5)
				2천~ 4천만원 2.5 (1.5)	26 (1.6)	2.7 (1.7)
				4천~ 5천만원 2.7	2.8	29
				* ()은 부부합산 생활수급자, 차상 적용되는 우대금리		
				* 다자녀가구 0.5% 고령자·노인부 ⁽ 0.2%p 금리 우더 다른 우대금리외	걍·다문화 내하되, 위	· 장애인 1%p 포함
				* 부동산 전자계약 계약시 0.1%p 금리와 중복적 (까지 한시 적용)	우대하되, 1 랑 가능(단,	가른 우대
•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	수도권 17,000,	1.2~2.1	2년이내 일시상환 (4회 연장,	- 부부합산 총소 이하인 무주택		
	지방 13,000		최장 10년 가능)	- 대출금액은 전시 서 소득·부채 결과에 따라 결 * 대상주택: 85m 억원 이하(지방	등 개인신{ 정 ' 이하, 전	}평가 세보증금3
				<만기 · 보증	금별 금리현	황>
				0年	천만 1억원 ~ ~ 억원 15억위	1.5억 원초과
				연소득	기원 1.3 1.3 1.4	1.5
				2~4천	1.6 1.7	1.8
				4~6천 만*원 1.8 이하	1.9 2.0	2.1
				* 부동산 전자계약 계약시 0.1%p 금리와 중복적원 까지 한시 적용)	우대하되, 1 랑 가능(단,	가른 우대
• 주거안정 월세자금	960 (메워 40마위씨		2년이내 일시상환 (4회 연장,	- 무주택자이며	주거급여	비수급자
	(매월 40만원씩 2년간)	[1.5(주대형)	(4의 건강, 최장 10년 가능)	- (일반형) 부부함 5천만원 이하를 해당하지 아니	로서 우대	
	<u> </u>	<u> </u>				

(단위	:	만원,	%)
	_		$\overline{}$

			i	(단위 : 만원, %)
자금종류	호당융자 한 도 액	연이율	융자기간	비고
				- (우대형) 아래 가~라. 해당자 가. 무소득 취업준비생 나. 취업 5년대 사회초년생 다.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라. 근로(자녀)장려금 수급자 * 가와 나는 만35세 이하인 자
				- 성실 납부자는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시 금리 0.2%p 우대
• 퇴거자 전세자금	5,000	3.0	2년이내 일시상환 (2회 연장 가능)	-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전 세보증금의 70% 이내에서 소득·부 채 등 개인신용평가결과에 따라 결정
				- 생활수급자, 독거노인의 연 1.0% 적용(지자체장 추천시)
ㅇ 주택시장 안정 및 주기	시복지향상(국	민임대주티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
• 국민임대주택자금		1.8	30년 거치 15년 상환	-지자체(지방공사 포함)·주택공사에 서 재정지원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
· 전용면적 35㎡이하	3,569			는 주택(임대기간 30년) -호당융자 한도액은 주택규모별로
· 전용면적 35㎡초과~ 45㎡이하	4,920			-오성용자 선도적은 무역비도필도 차등적용
· 전용면적 45m'초과~ 60m'이하	6,856			-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예비 인증을 받은 경우 대출한도를 10% 상향 조정(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는 20% 상향)
ㅇ 주택시장 안정 및 주기	복지향상(행	복주택용지	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
 행복주택자금 · 전용면적 45㎡이하 (매입형, 산업단지 내 행복 	4,215	1.8	30년 거치 15년 상환	-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소형(전용 면적30m'이하) 주택사업 추진 또는 지 자체(자방공사포함)가 사업사행자인 경우 연 1.0% 적용
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m²이하)				-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예비 인증을 받은 경우 대출한도를 10% 상황 조정(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는 20% 상향)
ㅇ 주택시장 안정 및 주기	 복지향상(공	'공임대용지		
• 공공임대주택자금 • 전용면적 60㎡이하	5,500	2.3 [디딤돌 대출금리]	10년(의무 임대기간이 10년인 경우 15년)	-민간사업자 등이 건설하는 주택 (임대기간 5년 이상) -건설 중(준공前)인 미분양주택을 5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자
· 전용면적 60㎡초과		2.8	이내에서 임대기간	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

	호당융자			(단위 : 만원, %)
자금종류	한 도 액	연이율	융자기간	비고
~85m'이하 (청년·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는 60m'이하만 해당)	7,500 (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는 매입가격의 30%)	[디딤돌 대출금리] (청년·신혼 부부 매입임대 리츠는 1.0%)	동안 거치후 20년 상환 (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는 10년(10년 연장 가능) 후 일시상환)	받은 주택 -부도가 발생한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받는 경우 대환일로부터 10년간 연 2.3% 적용 -[]는 입주자 대환시 금리 ・무주택 요건 및 소득요건 증빙・충족시, 디딤돌 대출금리와 연동하되, 미증빙시 연 2.8% -전용면적 60㎡초과 ~ 85㎡이하로서 지자체(지방공사 포함)・LH공사 「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에 따라 매입하는 주택은 연 2.3% 적용 ・호당한도 7,500만원 -공공기관 또는 공공임대리츠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1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대출한도를 10% 상향 조정(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는 20% 상향) -청년·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 매입대상주택은 수도관(서울·인천·경기) 4억원이하, 그 외 지역 3억원 이하
• 도시형 생활주택 • 단지형 다세대, 연립 -전용면적 60m'이하 -전용면적 60m'초과 ~ 85m'이하	5,000 5,000	3 [디딤돌 대출금리] 4 [디딤돌	10년 거치 20년 상환	-기존 임대주택건설기준 준용 · 무주택 요건 및 소득요건 증빙 · 충족시, 디딤돌 대출금리와 연동하되, 미증빙시 연 2.8% -[]는 입주자 대환시 금리
~ 65111 01 04		대출금리]		
▪ 도시형 생활주택(원룸) ㆍ14㎡이상∼30㎡미만	m²당 80	4.0	10년 거치 20년 상환	-용자 한도 : 최저 1,120만원(14m), 최고 5,000만원(50m) -[]는 입주자 대환시 금리 ·무주택 요건 및 소득요건 증빙
・30㎡이상∼50㎡이하	m²당 100	대출금리]		· 누구역 보건 및 소득보건 등명 충족시, 디딤돌대출금리와 연동 하되, 미증빙시 연 2.8% 단, 원룸 대출기간 20년의 임대하 는 주택을 매각(분양)하는 경우에 는 잔여대출조건을 유지하여 대 환처리 (금리는 대환금리 연 2.8% 적용)
▪ LH공사 경락자금				
· 전용면적 60㎡이하	경락가격 범위내	2.3 [디딤돌	10년(의무임대기간 이 10년인경우	-입주자격 :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

(단기 : 단펀, /0.	(단위	:	만원,	%
---------------	-----	---	-----	---

자금종류	호당융자 한 도 액	연이율	융자기간	비고
· 전용면적 60㎡초과 ~85㎡이하	경락가격 범위내	대출금리] 2.8 [디딤돌 대출금리]	15년) 이내에서 임대기간동안 거치후 20년상환	-[]는 입주자 대환시 금리 · 무주택 요건 및 소득요건 증빙충 족시, 디딤돌 대출금리와 연동하 되, 미증빙시 연 2.8%
• 신축다세대 매입임대 · 신축다세대	호당 8,400	2.0	10년 거치 20년 상환	- 민간이 신축하는 60m'이하의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여 전세형 임대로 공급하고자 하는자 (공공주택법 적용 주택에 한함)
• 매입임대 주택자금	7,500 (수도권 1.5억원)	4.0	5년 이내 일시상환	-매입대상 : 신규분양, 미분양 및 기존 아파트 - 신규분양(14.2.26.이후 분양) 주택 · 대출한도 : 6천만원(수도권 1억원) -공공기관은 연 3.0% 적용 · 임대종료후 분양전환된 주택은 제외 -임대기간동안 1년단위로 대출기간 연장이 가능하며, 연장시 매년 당초 대출금 원금의 4%이상 의무상환 ※ 신규대출의 경우 5년간의 의무 임대기간이내 대상주택 매도 또는 중도상환시에는 위약금리 부과
준공공임대 매입자금 전용면적 60㎡이하 60㎡초과∼ 85㎡ 이하 85㎡ 이하 60㎡ 조과∼ 85㎡ 이하	7,500 (수도권 1.5억원)	2.7	10년이내 일시상환	-매입대상 : 신규분양, 미분양 및 기 존주택포함 - 신규분양('14.2.26.이후 분양) 주택 · 대출한도 : 6천만원(수도권 1억원)
ㅇ 주택시장 안정 및 주기	_ 거복지향상(디	가구매입임	-]대용자)	
• 다기구매입임대	시행자별 호당 지원단가의 50% 수준	1.0	20년거치 20년상환	-매입대상: 호당 전용면적 85m 이하 다가구·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(다가구) 서울 5,600만원, 인천·경기 5,500만원, 부산 5,300만원, 대구 5,000만원, 제주 4,600만원, LH 5,500만원, (원룸) 4,500만원(LH, 서울특별시) (리모델링) 5,000만원 (청년 매입임대) 서울 11,350만원, 경기 7,000만원, 인천 6,700만원, 부산 5,850만원,

	중디오키			(단위 : 단원, %)
자금종류	호당융자 한 도 액	연이율	융자기간	비고
				대구 5.300만원, 광주 4,100만원,
				대전 4,750만원, 기타 4,350만원
				(신 혼부부 매입임대)
				서울 11,350만원, 경기 7,000만원,
				인천 <i>6,7</i> 00만원, 부산 5,850만원,
				대구 5.300만원, 광주 4,100만원,
				대전 4,750만원, 기타 4,350만원
ㅇ 주택시장 안정 및 주기	니 시복지향상(민	간임대주택	└──── ᆌ 용 자)	,, e 2,,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
•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			12년(기업형·준공공	-기업형임대사업자 또는 일반형임대
			임대주택),	사업자가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
· 전용면적 45㎡이하			6년(단기임대주택)	-호당 융자 한도액 및 금리는
-기업형, 30세대이상 준공공	5,000	2.2	만기 일시상환	주택규모별로 차등적용
-29세대이하 준공공	5,000	2.7	12~20년(사회주택)	-대출기한 연장시 기업형 준공공임대주택
-단기, 준주택	5,000	3.2	만기 일시상환	(준주택 제외)은 당초 대출원금의 5%
				이상 상환, 그 외는 10% 이상 상환 -의무임대기간(8년) 경과후 분양전환하지
· 전용면적 45㎡초과~				'- 의구함대 (전(8년) 경과우 문장신환아시 ' 않은 경우 1년마다 0.1%p, 최대 1.0%p
60 m² 이하				까지 인하
-기업형, 30세대이상 준공공		2.5		※ 신규대출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내
-29세대이하 준공공	7,000	3.0		대상주택 매도 또는 중도상환시에는
-단기, 준주택	7,000	3.5		위약금리 부과
				※ 사회주택은 기업형 및 30세대이상
· 전용면적 60㎡초과~				준공공임대주택의 대출한도 적용
85m [*] 이하				※ 사회주택 또는 기금출자 등 공공지 원을 받아 시세미만의 초기임대료, 무
-기업형, 30세대이상 준공공		3.0		천을 받아 시세미만의 소기입대료, 두 주택자 우선공급, 청년 신혼부부 임대
-29세대이하 준공공	9,000	3.5		료 추가 할인 등을 적용받는 임대주
-단기, 준주택	9,000	4.0		택 및 준주택(주거 준주거지역 제외)
				의 경우 기업형 및 30세대이상 준공공
				임대주택 적용 이자율에서 0.2%p 추
				가 인하 가능
				※ 로드맵 발표(*17.11.29) 이전에 이미
				부지가 확보(민간제안사업 기투위,
				LH 택지공모 공고, 정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총회의결 기준[된 사업은
				중전 융자한도 및 이율 적용
•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			12년(기업형·준공공	-기업형 또는 일반형임대사업자가
(다가구)	50,000	3.0	임대주택),	건설하는 단독주택(다가구)
	(가구당 6,000)	(2.0)	6년(단기임대주택)	-()는 사회주택 적용 금리
			만기 일시상환	-대출기한 연장시 당초 대출원금의 10%
			8~20년(사회주택)	이상 상환
			만기일시상환	※ 신규대출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내
				대상주택 매도 또는 중도상환시에는
- 미기이미즈미페이크 그			이크/키어원 주고고	위약금리 부과
•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			8년(기업형·준공공	-기업형임대사업자 또는 일반형임대 사업자가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
· 전용면적 45㎡이하			임대주택), 4년(단기임대주택)	-호당 융자 한도액 및 금리는
· 전용면식 45m이야 -기업형, 준공공	5,000	2.2	4년(단기임내누덕) - 만기 일시상환	주택규모별로 차등적용
-기합영, 군중등 -단기, 준주택	5,000	3.2	12~20년(사회주택)	-대출기한 연장시 기업형·준공공임대주택
인기, 민구역	3,000	٥.۷	1470년(사회구택)	

자금종류	호당융자 한 도 액	연이율	융자기간	비고
전용면적 45㎡초과~ 60㎡이하 -기업형, 준공공 -단기, 준주택 전용면적 60㎡초과~	8,000 7,000	2.5 3.5	만기 일시상환	(준주택 제외)은 당초 대출원금의 5% 이상 상환, 그 외는 10% 이상 상환 - 의무임대기간(8년) 경과후 분양전환하지 않은 경우 1년마다 0.1%p, 최대 1.0%p가지 인하 ※ 신규대출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나 대상주택 매도 또는 중도상환시에는 위약금리 부과
85㎡이하 -기업형, 준공공 -단기, 준주택	10,000 9,000	3.0 4.0		** 사회주택은 기업형 및 준공공임디주택의 대출한도 적용 ** 사회주택 또는 기금출자 등 공공자원을 받아 시세미만의 초기임대료, 두주택자 우선공급, 청년 신혼부부 임대들추가 할인 등을 적용받는 임대주택 및 준주택(주거 준주거지역 제외)의 경우 기업형 및 준공공임대주택 작용이자율에서 (0.2%p 추가 인하 가능 ** 로드맵 발표(17.11.29) 이전에 이미부지가 확보인간제안사업 기투우 IH 택지공모 공고, 정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총회의결 기준)된 사업은 중전 융자한도 및 이율 작용
•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 (다가구)	50,000 (가구당 6,000)	3.0 (2.0)	8년(기업형·준공공 임대주택), 4년(단기임대주택) 만기 일시상환 8~20년(사회주택) 만기일시상환	-기업형 또는 일반형임대사업자가 매입하는 단독주택(다가구) -()는 사회주택 적용 금리 -대출기한 연장시 당초 대출원금의 10% 이상 상환 ※ 신규대출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나 대상주택 매도 또는 중도상환시에는 위약금리 부과
도시재생활성화 (도시지	H생사업 융지)		
• 도시재생사업 융자	총사업비의 20%	2.5 (변 동금 리)	13년이내 일시상환	-용자대상: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내어 서 경제기반형 또는 근린재생형 도시 재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(리츠)
•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 지원 융자	총사업비의 70% (담보인정가액 이내) *임대료 인상률 제한시 최대 80% *임차자금은 전세보증금의 90%	1.5 (변동금리)	5년 만기 일시상환 (원리금(원금) 분할 상환 가능) * 융자기간 1회 연장 가능 (총10년) * 지자체 등 2회 연장 가능 (총 15년)	-용자대상: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니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마을기업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 등 법인 또는 상가소유자, 청년창업자 등 개인
•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	구역별 총사업비의 50% 이내	1.5 (변동금리)	5년 만기일시상환 (준공후 6개월 이내)	-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시행자(조합 또는 공동시행자) -초기사업비 지원 : 조합설립인기

				(단위 : 만원, %)
사극조트	호당융자 한 도 액	연이율	융자기간	비고
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 (공 공 	공적입대주택 공급시 한도 70% 상향) 구역별 총사업비의 50% 이내 공적입대주택 공급시 한도 70% 상향)	1.5 (변동금리)	5년 만기일시상환 (준공후 6개월 이내)	지원 총사업비의 5% 이내(한도 15억원) -본 사업비 지원 : 사업시행인가이후부터 준공인가 시까지의 사업비지원, 총사업비의 50%(既지원된초기사업비포함)이내 -공적임대주택 공급시 한도 상향 : 연면적의 20% 이상을 공공임대공공지원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,총사업비의 70%까지 지원 - 『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특례법』 시행일(18.2.9.)이후 적용-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(토지등소유자 또는 공동시행자)대상 -초기사업비지원 : 주민합의체신고이후 사업시행인가이전까지의 초기사업비지원 : 주민합의체신고이후사업시행인가이전까지의 초기사업비지원, 총사업비의 5% 이내-본 사업비지원 : 총사업비의 5%(既지원된초기사업비포함)이내 -공적임대주택공급시 한도 상향 : 연면적의 20% 이상을 공공임대공사업비의 70%까지지원

이후 사업시행인가 이전까지의 사업비